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시행 2026.10.08]
(제정) 2026.10.08 조례 제2423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협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9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파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2026. 10. 8.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